

## 참고1

## 부가가치세 카드매출 세액공제 관련

- (제도개요)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등의 1.3%\*\*(연간 500만원 한도)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(부가가치세법 §46)

\* 신용·직불·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

\*\* 음식·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.6%

- (가맹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인식)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여타의 공제(매입세액공제) 등과 함께 정산처리되어 납부세액이 산정됨에 따라 가맹점의 인지·체감도가 낮음

- 또한,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인식하더라도 신용카드수수료와 연계하기 보다는 정부로부터의 별도 환급으로 이해하는 경향

### < 카드수수료 체계개편과 매출세액공제 한도확대\*의 효과 >

\* '19년 공제한도 확대(現 500만원 → 1,000만원) 전제

\*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효과 분석

구분	가맹점 수수료	年수수료 (만원)	매출세액공제 대상		가맹점 부담효과	
			1.3%	공제한도	年부담액(만원)	실질수수료율
영세 (3억원이하)	0.8%	240	390	500	△150	△0.5%
				1,000	△150	△0.5%
중소 (3~5억원)	1.3%	390~650	390~650	500	0~150	0%~0.3%
				1,000	0	0%
개편전	일반 (5~10억원) 2.05%	1,025~2,050	650~1,300	500	525~1,550	1.05%~1.55% (A)
				1,000	375~1,050	0.75%~1.05%
개편후	일반 (5~10억원) 1.4%	700~1,400	650~1,300	500	200~900	0.4%~0.9%
				1,000	50~400	0.1%~0.4% (B)

(A) : 현행 카드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기준

(B) : 카드수수료 개편 후 수수료율 및 세액공제 한도 1,000만원으로 확대 기준

※ (세액공제 500만원 한도시) 연매출 3.8억원이하, (700만원 한도시) 연매출 5억원 이하는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, (1,000만원 한도시) 연매출 5~7.7억원은 실질부담 0.1%

## 참고2

## 마케팅비용 구성

